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(4급 1명)의 직급을 상향 조정(3급 또는 4급 1명)하려는 것임.

2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“4”를 “5”로,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“11”을 “10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“4”를 “5”로,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“11”을 “1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	<u>4</u>	<u>5</u>	+1
·	·	·	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<u>11</u>	<u>10</u>	-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1의2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	<u>4</u>	<u>5</u>	+1
·	·	·	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<u>11</u>	<u>10</u>	-1
·	·	·	
·	·	·	